



제40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23. 3. 17.(금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수 석 전 문 위 원

충청북도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O 제출일자: 2023년 3월 7일

O 회부일자: 2023년 3월 9일

3. 제안이유

○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교육시설물의 원활한 개축사업 추진을 해나가고자 하며,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O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(안 제3조제2항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시책으로 개축을 추진하는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교육시설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, 제3조에서는 "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"의 근거법령을 적용하였으며.
 - 조례안 제3조에 개축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6호 「국가시책 으로 개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」를 추가 신설하였습니다.
- 현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개축사업의 경우 대부분 그린스 마트스쿨 사업유형 중 40년 경과 노후 건축물 중 안전 등급 C등급 중 구조적 결함으로 보수・보강이 불가능한 경우(정밀 안전 진단 또는 정밀 안전 점검 보고서 확인)와 보수・보강 및 노후건물 개선(리모델링을 포함)에 필요한 비용이 개축 사업비의 70%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됨
- 충청북도교육청의 미래학교 검토위원회의 평가 기준 등이 개축심의 위원회의 역할과 중복 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됨